제810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산림청)	1.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시정명령 등(신설)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시정명령,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을 정함	1.비중요
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소방청)	1.성능인증시험시설 심사 교정조항 신설(신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시 시험시설 교정 확인 2.내용연수 경과 소방용품 사용기간 연장 및 검사방법 개선(강화) -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의 연장 사용기간을 성능확인검사 합격 시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사용'에서 성능확인검사를 통하여 '합격 시마다 계속 연장 사용'으로 완화 - 성능확인검사 강화(기존 '내압시험'에 '방사시험'을 추가, 표본시료 수를 기존보다 상향, 전문검사기관 지정시료 제출)	1.비중요 2.비중요
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해양수산부)	1.지정검역물의 범위 확대(강화) 지정검역물의 범위에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어류, 패류, 갑각류에서 양서류를 추가하여 지정함 2.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전 기재사항 추가(신설)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리에 필요한처방 관련 정보체계를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구축할 수 있도록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전의 기재사항에 추가 3.수산질병관리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강화)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산질병관리원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누적차수에 반영하지 않음	
4	변호사법 개정안 (법무부)	1.연수기관의 연수계획 제출·수정·보완의무(신설) 연수기관은 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까지 연수계획을 수립·제출, 법무부장관이 수정·보완 요구시 특별한 사유 없는 한 따르도록 함 2.지정연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지정취소 등(강화) - 법무부장관에게 지정연수기관의 종사 또는 연수 현황 등에 대한 서면·현장조사 및 개선·시정명령 권한 부여 - 법무부장관이 일정한 경우 연수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1.비중요 2.비중요
5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1.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표시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국민권익위원회)	1.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관련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범위, 부동산 개발 업무 범위, 신고내용 및 방법 등(신설) ○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광역지자체의 지방공사·공단*을 규정(안 제6조제1항) * 국민권익위원회 고시로 지정 예정 ○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 사업별 절차를 분석하여 지정권자, 승인권자 등 기관 역할별 ‘부동산 개발 업무’를 지정(안 제7조제1항 및 별표)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안 제8조)	1.비중요
7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의약품 표준제조기준(강화) -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제1장 비타민, 미네랄제제 중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 성분을 함유한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이상반응 내용 추가 -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제2장 해열진통제 중 어린이 해열진통제의 경우 만 2세 미만은 의사의 진료 없이 복용하지 않도록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2세 미만에 대한 복용제한 추가	1.비중요
8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개정안 (농촌진흥청)	1.비료의 원료 기준(강화) 페놀 또는 페놀이 함유되거나 페놀로 오염된 원료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 금지	1.비중요
9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녹색혁신기업 지정 및 지정취소(신설)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제정안 (환경부)	색혁신기업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위한 요건, 절차 등 규정 2.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신설) 전문연구기관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위한 요건, 절차 등 규정 3.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신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위한 요건, 절차 등 규정	2.비중요 3.비중요
10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환경부)	1.녹색혁신기업 지정 신청(신설)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 종류 규정 2.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신설)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 종류 규정 3.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신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 종류 규정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고용노동부)	1.개별실적요율 제도개선(신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1.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급인·관계수급인(이하 '수급인·관계수급인'이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파견사업주(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으로 합산된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 또는「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하고, 수급인·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서 전부 제외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도급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1호부터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한 경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한 경우는 "수급인"을 "도급인"으로, "관계수급인"을 "수급인"으로 본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도급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75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한 경우 3.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부터 제65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7조제1항, 제169조제1호, 제170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조제4호, 제172조에 따라 검찰청에 송치된 경우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⑦ 제6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날을 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보험급여 지급일로 본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산정할 때 수급인·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또는 제39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7조제1항, 제168조제1호에 따라 검찰청에 송치된 경우에는 도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서 100분의 50을 제외하고,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포함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법 제15조제4항 상의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 「산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할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도 도급인 공사에 포함한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최근 3년 동안에 도급인 사업에서 발생한 도급인 근로자 사고사망자와 수급인·관계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자, 파견근로자 사고 사망자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별표1 관련)이 인하(이하 ‘인하비율’이라 한다)되는 경우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조정은 별표1의2에 따른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을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의4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법 제15조제6항제1호”를 “법 제15조제8항제1호”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6항제2호”를 “법 제15조제8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6항제3호”를 “법 제15조제8항제3호”로 한다.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기준 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1.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사항(신설) o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시행(제3조) o 불법촬영물등의 신고기능 마련(제4조) -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신고기능 배치 o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제6조) - 검색시 불법촬영물등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 연관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 2.성능평가 기준(신설) o 성능평가 기준(제11조) - 성능평가 평가지표 설정(식별가능성, 일관성, 그 밖에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성능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성능평가 통과기준은 자문위원회 자문과 방통위와의 협의를 거쳐 수행기관이 설정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기업 지정(신설) ㅇ 친환경차법에서 ①공시대상기업집단, ②차량대여사업자, ③일반택시운송사업자, ④여객운송사업자, ⑤화물운송사업자 중 구매목표제 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바, 구체적인 구매목표제 대상을 정함 2.전기차충전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강화 (강화) ㅇ 의무대상을 아파트는 100세대이상, 공중이용시설 등은 총주차대수 50면이상 ㅇ충전시설 의무설치비율을 시행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5%, 법 시행일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은 2%로 설정 3.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강화 (강화) ㅇ 전기차가 전기차충전기에 충전개시를 하지 않고 주차만 하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최대주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단속 ㅇ 충전시설을 전기차충전이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1.비중요 2.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단속 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확대(신설) ○ 법에서 규정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부문 대상을 추가 ○ 충전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5.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신설) ○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기한을 규정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감면규정, 부과 절차 등을 규정	
14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개정안 (고용노동부)	1.직업상담원 채용제도 개선(강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시그이 서류를 제출받고 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1.비중요
15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1.품질관리 등 점검 결과 위법 사실에 대한 조치(강화) 품질인정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점검 및 위법사실에 대한 조치 2.품질인정제도 적용 대상 추가(강화) 방화문, 복합자재,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조 등에 대하여 품질인정제도 시행 3.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강화) 품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근거 바련	
16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1.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대상 항목 확대(강화) ○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의무를 추가 2.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강화) ○ 중개사고에 대한 실직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를 상향(개인 1억 → 2억, 법인 2억 → 4억)	1.비중요 2.비중요
17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중개사무소 내의 게시 및 고지사항 확대(강화)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고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여 중개보수 협상을 강화하고, 사무소 내사업자등록증 게시를 의무화	1.비중요
1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등의 비용 요청 근거 마련(신설) ○ 국내외 사례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공장심사에 필요한 심사비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 * 공장심사비용 + 사업비용(항공료, 숙박, 식비 등)	1.비중요
19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교육부)	1.보건교사 배치 기준(신설)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	1.비중요